

제4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요강

- ※ 응시자는 불이익 예방을 위해 본 요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라 모든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목적

-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함으로써 **우리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 모든 국민이 한국사에 대해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갖도록 함
- 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평가 문항을 개발함으로써 **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
- 역사학습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함으로써 학생 및 일반인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함

2. 기본 방침

- 응시 대상은 한국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인도 가능)으로 함
- 시험은 **심화·기본 2종류**로 구분하되, 시험 종류별로 성적에 따라 **평가 등급을 3개로** 나누어 인증
- 합격 기준은 시험 종류별 만점의 **80% 이상**이면 1급(심화), 4급(기본)으로 하고, **70% 이상**인 경우 2급(심화), 5급(기본)으로 하며, **60% 이상**이면 3급(심화)·6급(기본)으로 인증
- 문항 출제는 **선택형(객관식)**으로 심화·기본 모두 50문항으로 함

3. 응시 대상

- 한국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인도 가능)
 - 한국사 학습자
 - 상급 학교 진학 희망자
 - 취업 및 해외 유학 희망자 등

4. 시험 일자

회차	시험 일자
제49회	2020. 9. 19.(토)

※ 천재지변 및 감염병 유행 등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모든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 종류 및 인증 등급

시험 종류	인증등급	합격 점수	평가 수준	문항 수 (객관식)
심화	1급	만점의 80%이상	대학교 교양 및 전공 학습, 고등학교 심화 수준	50문항 (5지 택1)
	2급	만점의 70%이상		
	3급	만점의 60%이상		
기본	4급	만점의 80%이상	중·고등학교 학습, 초등학교 심화 수준	50문항 (4지 택1)
	5급	만점의 70%이상		
	6급	만점의 60%이상		

6. 시험 시간

시험 종류	시 간	내 용	소요시간
심화	10:00~10:10	오리엔테이션(시험 시 주의 사항)	10분
	10:10~10:15	신분증 및 수험표 확인(감독관)	5분
	10:15~10:20	문제지 배부	5분
	10:20~11:40	시험 실시 (50문항)	80분
기본	10:00~10:10	오리엔테이션(시험 시 주의 사항)	10분
	10:10~10:15	신분증 및 수험표 확인(감독관)	5분
	10:15~10:20	문제지 배부	5분
	10:20~11:30	시험 실시 (50문항)	70분

7. 활용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1년부터 7급 국가(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2년부터 순경공채, 경찰간부후보생 등 경찰채용 필기시험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 일부 대학의 수시 모집 및 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 ※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8. 시험 권역(52개 지역)

- ▶ 구체적인 응시 장소는 원서접수 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함.
- 접수인원이 증가할 경우 임시고사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고사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접수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천재지변과 감염병 유행시 일부 권역에 고사장이 폐쇄될 수 있으며, 고사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서울지역(11) : 서울1~서울11
- 부산지역(4) : 부산1~부산4
- 대구지역(2) : 대구1, 대구2
- 인천지역(2) : 인천1, 인천2
- 광주지역(2) : 광주1, 광주2
- 대전지역(2) : 대전1, 대전2

- 울산지역(1) : 울산
- 경기지역(9) : 수원, 평택, 안산, 안양,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구리
- 강원지역(3) : 춘천, 강릉, 원주
- 충남지역(2) : 천안, 서산
- 충북지역(2) : 청주, 충주
- 경남지역(3) : 창원1, 창원2(구 마산), 진주
- 경북지역(3) : 안동, 구미, 포항
- 전남지역(3) : 순천, 목포, 여수
- 전북지역(2) : 전주, 익산
- 제주지역(1) : 제주

9. 합격자 결정

시험 종류	인증 등급	합격 점수	비고
심화	1급	만점의 80% (80점)	
	2급	만점의 70% (70점)	
	3급	만점의 60% (60점)	
기본	4급	만점의 80% (80점)	
	5급	만점의 70% (70점)	
	6급	만점의 60% (60점)	

※ 배점 : 100점 만점(문항별 1~3점 차등 배점)

10. 시험 종류별 평가 내용

시험 종류	평가 내용
심화	한국사 심화과정으로서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주요 사건과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상황 및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
기본	한국사 기본과정으로서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필수 지식과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

11. 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0. 8. 18.(화) 09:00 ~ 2020. 8. 27.(목) 18:00
- 접수 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 활용
※ 휴대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원서 접수는 불가하며, PC를 이용하여 접수.

12. 응시 수수료

구분	심화	기본
응시료	22,000원	18,000원

- * 응시 수수료를 가상계좌로 입금 시, 은행별로 마감 정리시간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금(환불) 마감일에는 22시까지 반드시 입금(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은행별 마감시간 확인 요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50%가 면제됩니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란에 체크하고, 응시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시험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50% 환불)

13. 접수 취소 및 환불 기간

- 취소 및 환불 기간
 - 2020. 8. 18.(화) 09:00 ~ 2020. 9. 13.(일) 23:59 : 응시료 전액 환불
- 취소 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 접속 후 취소
- 시험일 이후 환불 규정 : 전액 환불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국사편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당일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응시를 못한 자로, 별도의 서류(증빙자료)를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환불
 - 가. 응시자가 사망하거나 시험 당일 수술·입원한 경우
 - 나.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와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사유로 인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50% 환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붙임 4 참조)를 응시 원서접수 시에 제출(시스템에 응시 수수료 100% 환불 종료 기간까지 업로드하여 제출),
 - 시험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납부액의 50% 환불조치

14. 응시 원서 변경 등 일정

- 시험 종류 변경 : 접수 기간 내에 이미 접수된 원서를 취소하고, 다시 접수
 - ※ 접수 기간 종료 이후에는 시험 종류(심화, 기본) 변경 불가
- 응시 권역 및 시험장 변경 기한 : 2020. 9. 13.(일) 23:59까지
- 응시 원서 첨부 사진 수정 기한 : 2020. 9. 19.(토) 10:20까지
 - ※ 수험표에 본인 얼굴 사진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를 분명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풍경, 동물, 사물, 그림 사진 등) 시험 응시 불가
 - <사진 규정 반드시 숙지 요망 : 본인식별 불가 사진 예시(5가지 유형 - 9쪽 참조)
- 시험장은 응시생이 직접 선택
 - ※ 접수 진행 상황에 따라 마감되는 시험장이 있을 수 있음
 - ※ 접수 인원이 증가할 경우 임시고사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고사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접수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응시 불가
- 수험표 출력 일자 : 2020. 9. 15.(화) 15:00 ~
 - ※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

15. 시험 문항 이의 신청 기간

- 기간 : 2020. 9. 21.(월) 09:00 ~ 2020. 9. 23.(수) 18:00
- 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심의 결과 발표 : 2020. 9. 28.(월) 16:00 홈페이지에 발표

16. 시험 결과 발표

- 발표 일자 : 2020. 10. 2.(금) 10:00
- 성적 통지 방법 : 응시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성적 조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붙임 1 참조)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통지표(붙임 2 참조) 출력 가능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카드 포함)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통지표 등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음

17. 응시자 유의 사항

○ 응시자 지참물

- 수험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에서 출력
- 신분증 : 본인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 개인 준비물 :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과 수정테이프(수정액), 시계 등

□ 응시자별 규정 신분증(참고)

구분	신분증
초등학생	수험표
중·고등학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 (국외)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학교생활기록부(인적사항이 포함된 1면만을 활용하며,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재학증명서(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붙임 3 서식 활용)
일반인(대학생, 군인 포함)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확인증명서(군인만 해당하며, 붙임 3 서식 활용)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재외국민	재외국민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 불가함. 단, 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하여도 응시 가능

○ 응시자 사용 금지 물품

- 무선 통신기기 : 휴대전화기, MP3, 무전기, 호출기, 전자사전, 무선기능 전자시계(시계형 스마트기기 포함), 디지털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
- 응시자는 시험 당일 **10:0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함
- 답안지 PMR 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이나 다른 펜으로 표기한 것, 이중으로 표기한 답은 무효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시 유의하여야 함

<PMR 답안지 작성 방법>

바른 방법	바르지 못한 방법
●	    

-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과 수정테이프(수정액)는 수험생이 준비하여야 함
- PMR 답안지 작성을 잘못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시험 종료 시간이 되면 제출하여야 함
- 시험 종료 시간이 되면 문제풀이를 중단하고, 답안지는 책상위에 얹어놓고 조용히 퇴실하되,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함(*시험 종료 15분 전까지는 퇴실할 수 없음)
-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즉시 퇴장 조치됨과 동시에, **당해 시험을 포함하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당해시험 무효 및 연속 4회 응시 금지로 함**(아래 도표 참조)
 - 부정행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험생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일 이내 담당자 이메일(khe1@korea.kr)로 이의 신청 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검토 후 처분을 최종 확정, 수험생에게 통보함.

<당해시험 무효>

- ▶ 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행위
-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무전기, 호출기, 전자사전, 무선기능 전자시계, 디지털카메라, 무선기거나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 알림음 혹은 진동을 발생시킨 경우
※ 전자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제거해야 하며,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도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처리
- ▶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 착오 등 단순한 실수로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당해시험 포함 연속 4회 응시금지>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 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 ▶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무전기, 호출기, 전자사전, 무선기능 전자시계, 디지털 카메라, 무선기거나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등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
- ▶ 신분증을 위조·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 ▶ 고의적으로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 ▶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수험표 사진 규정 철저히 숙지 이행

- 본인 얼굴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사진(풍경, 동물, 사물, 그림 사진 등)일 경우 시험 응시 불가(아래 예시 참조)

<본인식별 불가 사진 예시>

- ① 사진이 없거나 풍경, 동물, 사물, 그림 사진
- ② 선글라스, 목도리, 모자, 손바닥 등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
- ③ 본인이 아닌 연예인, 친구 등의 사진
- ④ 사진 안에 본인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 있는 사진
- ⑤ 기타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잘린 사진, 전신사진, 크기에 안 맞는 작은 사진, 가로세로 비율이 맞지 않는 사진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00년 1월 1일
성 별 : 남
합격등급 : 1급
인증번호 : 00-123456

위 사람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제0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위 급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100년 1월 26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통지표

제 00회 (2100-01-26시행)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급수	점수	합격/불합격
123456789	홍길동	1900-01-01	남	1급	90	합격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 <참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통지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음. 필요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www.historyexam.go.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확인증명서				
사진 (3×4) 반드시 사진 위에 학교장 또는 부대장의 직인 또는 철안을 받아야 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학교/부대			
용 도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용			
연 락 처				
발급업무 담당자	성명		유효기간	중·고등학생 : 당해 연도
	연락처			군인 : 해당 회차
상기자는 본 학교/부대 소속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0. . . 기관장 _____ (직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시험 당일 규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대학원생이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허위 작성 시 민·형사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붙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사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4.20.>

제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 유의사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

210mm×297mm[인쇄 용지(특급) 120g/㎡]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협조사항 안내문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응시자 협조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협조 사항

○ 마스크 반드시 착용 후 입실

- 시험장(실) 입실 전후, 시험시간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 ※ 마스크 미 착용시 시험장(실) 입실 불허 및 시험 응시 불가
- ※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협조

○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

- 시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 및 고열($37.5^{\circ}\text{C} \uparrow$),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경우 응시 불가
- 주 출입구에서 손 소독제로 반드시 손 소독 후 입실
- 개인위생을 위해 손 씻기 철저, 기침예절 준수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 시험 응시 불가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대상자(자가격리대상자 포함) 등 응시 불가
- * 확진환자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시험 중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퇴실 조치

- 시험장 관할 보건소 통보 및 선별 진료소 방문 연계 등 조치

○ 취업, 승진, 진학 등 시험 성적이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시험 응시 자제

- 고사장 확보 및 좌석 거리두기 실시로 인해 원서접수를 제한할 수 있음
- ※ 50회(10.24(토)) 실시 예정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외부인(학부모) 출입 불가

-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SMS 등을 통해 수험생 협조사항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숙지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요망
- 수험생 이외의 외부인(학부모 포함)의 경우 시험장 출입 불가

○ 고사장 마감 및 폐쇄 등 고사장 변경 관련 협조

- 일부 권역 고사장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고사장이 모두 마감될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원서 접수 이후 「코로나19」 관련 긴급 상황 발생 또는 고사장 측 사정으로 고사장이 폐쇄되어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대체고사장 확보 불가 시)
- ※ 고사장 폐쇄로 인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료 전액 환불 예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가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가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통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